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출연안상정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5-116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
2015-1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2015-11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14
2015-119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23
2015-1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28
2015-121	거창군농업회의소 출연(안)	33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안 번호	2015-116
----------	----------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이사장직무대행 이성복)
- 사 업 비 : 1,0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1,400	1,000	1,000	-	-	1,000	-

- 사업내용
 - 거창군장학회 사무국 운영, 거창군 인재육성사업 등
(장학사업,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중학생 거창인재스쿨 운영 등)

3.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 기대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출연안상정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5-116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
2015-1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2015-11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14
2015-119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23
2015-1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28
2015-121	거창군농업회의소 출연(안)	33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안 번호	2015-116
----------	----------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이사장직무대행 이성복)
- 사 업 비 : 1,0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1,400	1,000	1,000	-	-	1,000	-

- 사업내용
 - 거창군장학회 사무국 운영, 거창군 인재육성사업 등
(장학사업,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중학생 거창인재스쿨 운영 등)

3.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 기대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_기관현황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5-0015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 12. 16 - 장학기금 10억원 달성 : 2009년 - 사무국 개소 : 2011. 2월 - 장학금 지급(현재) : 1,811명/2,875백만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명	17명			
임 원 (‘15.10.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공석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이○○	거창군의장		당연직(재직기간)		
	이사	강○○	거창군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사	강○○	모동기업대표		2005.12.16~2017.12.15		
	이사	이○○	전 교육위원		2005.12.16~2017.12.15		
	이사	정○○	재경경남도민회장		2005.12.16~2017.12.15		
	이사	최○○	화성건설대표		2005.12.16~2017.12.15		
	이사	신○○	거창농협조합장		2012. 8. 5~2016. 8. 4		
	이사	김○○	체육회부회장		2012. 8. 5~2016. 8. 4		
	이사	조○○	거창대학교수		2012. 8. 5~2016. 8. 4		
	이사	최○○	상공협의회장		2013.12.16~2017.12.15		
	이사	도○○	거창홍사단대표		2013.12.16~2017.12.15		
	이사	최○○	거창대검임교수		2013.12.16~2017.12.15		
	이사	강○○	거창위생대표		2013.12.16~2017.12.15		
	이사	윤○○	거창중앙고교장		2013.12.16~2016. 8. 4		
	감 사	강○○	거창군의원		2011.12.16~2015.12.15		
	감 사	이○○	이재민세무사대표		2013.12.16~2015.12.15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1,314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690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1,314 (자산 총액)
	예산액	11,414	11,169	12,030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690		자본	11,314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030			716		11,31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4.12.31)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5-117
----------	----------

제출연월일 : 2015. 11 . .

제출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개요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965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 업 비 : 2,956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3,085	2,965	2,965	-	-	2,965	-

- 사업내용 :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

3. 부서의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이 필요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시·도연구원의 정책 제언은 관련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세제 개편은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그 권한이 정부와 국회에 있으므로 특정 시·도연구원과 유기적 협력이 어려움
- 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므로 행자부의 직접 출연은 재정분권에 소극적인 기재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 붙임 3

[붙임 1]_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전화번호 : 02-2071-2720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5.09.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3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건되거나 당연직은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16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00.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박○○	○○군수		2015.02.28~2016.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박○○	○○특별시 재무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류○○	○○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도 자치안전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구 부구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정○○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 지 지자체가 출자·출연 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5,380 (자산 총액)
	예산액	7,625	8,315	7,518		부채	21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6,587	7,712	7,198		자본	5,16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668			6,599		1,069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붙임 3]_기타 참고자료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자료 송부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및 2016년도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자료(별첨자료 포함). 끝.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제과장),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과장),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노원구청장(재무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마포구청장(세무1과장), 기획재정부(재무과장),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세무과장), 동작구청장(세무1과장), 관악구청장(세무1과장), 서초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강동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영도구청장(세무과장), 부산진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해운대구청장(세무1과장), 시하구청장(세무과장), 금정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세무과장), 연제구청장(세무과장), 수영구청장(세무과장), 사상구청장(세무과장), 기장군수(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재무과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재무과장), 광주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세무1과장(수신불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세무1과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세무과장), 울주군수(세무1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세무팀장), 수원시(세정과장), 성남시(세정과장), 고양시(세정과장), 부천시(세정과장), 용인시(세정과장), 안산시(세정과장), 안양시(세정과장), 남양주시(세정과장), 의정부시(세정과장), 평택시(세정과장), 시흥시(세정과장), 화성시(세정과장), 광명시(세정과장), 파주시(세정과장), 군포시(세정과장), 광주시(세정과장), 김포시(세정과), 이천시(세무과장), 구리시(세무과장), 양주시(세무과장), 안성시(세무과장), 포천시(세정과장), 오산시(세무과장), 하남시(세무과장), 의왕시(세무과장), 여주시(세무과장), 동두천시(세무과장), 양평군수(세무과장), 과천시(세무과장), 가평군수(세정과장), 연천군수(세무회계과장), 춘천시(세정과장), 원주시(세무과장), 강릉시(세무과장), 동해시(세무과장), 태백시(세무과장), 속초시(세무과장), 삼척시(세무과장), 홍천군수(재무과장), 횡성군수(세무회계과장), 영월군수(재무과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 철원군수(세무과장), 화천군수(재무과장), 양구군수(재정운영과장), 인제군수(세무회계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양양군수(세무회계과장), 청주시(세정과장), 충주시(세정과장), 제천시(세정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세정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천안시(세정과장), 공주시(세무과장), 보령시(세무과장), 아산시(세무과장), 서산시(세무과장), 논산시(세무과장), 계룡시(세무회계과장), 당진시(세무과장), 금산군수(재무과장), 부여군수(재무과장), 서천군수(재무과장), 청양군수(재무과장), 홍성군수(재무과장), 예산군수(재무과장), 태안군수(재무과장), 천주시(재무과장), 군산시(세무과장), 익산시(세무과장), 정읍시(세정과장), 남원시(재정과장), 김제시(세정과장),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기획재정실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부안군수(재무과장), 목포시(세정과장), 여수시(세무과장), 순천시(세무과장), 나주시(세무과장), 광양시(세정과장), 담양군수(세무회계과장), 곡성군수(재무과장), 구례군수(재무과장), 고흥군수(재무과장), 보성군수(재무과장), 화순군수(재무과장), 장흥군수(재무과장), 강진군수(세무회계과장), 해남군수(세무회계과장), 영암군수(재무과장), 무안군수(재무과장), 함평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세무회계과장), 장성군수(재무과장), 완도군수(재무과장), 진도군수(세무회계과장), 신안군수(세무회계과장), 포항시(세정과장), 경주시(세정과장), 김천시(세정과장), 안동시(세정과장), 안동행정중앙(세무과장), 영주시(세무과장), 영천시(세정과장), 상주시(세정과장), 문경시(세무과장), 경산시(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창원시(세정과장), 진주시(세무과장), 통영시(세무과장), 사천시(세무과장), 김해시(회계과장), 밀양시(세무과장), 거제시(세무과장), 양산시(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재무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무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함천군수(재무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주임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 장	2015. 11. 10.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1682	(2015. 11. 10.)	접수 재무과-23365 (2015. 11. 11.)
우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0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23 팩스번호 02-2071-2722 / s1h11@kilf.re.kr / 대국민 공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5-118
----------	----------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출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및 시험인증분야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2016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국내 중소 승강기 제조기업의 수출전략화를 위한 종합 지원기반 구축을 하고자 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업무 협약서 제3조(2014.6.23)
 -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2013.12.20)
- 대 상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총괄책임자 강인구센터장)
- 사 업 비 : 2,250백만원(도비 1,150백만원, 군비 1,100백만원)
 - 총사업비 : 5,050백만원(국 1,600 도 1,150, 군 1,000, 기타 1,200)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타 (KTL)
합 계	3,600	2,250	5,050	1,600	1,150	1,100	1,200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3,500	2,150	3,750	1,600	1,150	1,000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	100	100	1,300	-	-	100	1,200

※ 국비 1,600백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수행함.

○ 사업내용

1. 승강기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 총수행기간 : 2014. 9. 1 ~ 2017. 8. 31.(36개월)
- 총사업비 : 9,800백만원(국 3,900 도 2,750 군 2,750 민간 400)
- 세부사업 내용

가. Pilot 생산지원설비 구축 : 승강기 완성품 및 부품의 시험생산 및 시제작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 승강기산업 지원 클러스터가 조성된 거창승강기R&D센터에 구축

나. 중소기업 공동모델 개발 : 중소기업 연합체를 통한 100% 순수 국산 수출전략형 승강기 시스템을 개발하며, 국제 규격(EN-81)에 부합하는 공동모델 제품 개발

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승강기 제조기업간 자유로운 제품유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승강기 제품(부품 및 시스템)의 분류체계를 규정하여 승강기 시장활성화 토대 마련

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마케팅창구 개설·운영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국내승강기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현지기업과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설 전담기능 구축

2.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업비 : 130백만원(군비 100백만원, KTL 30백만원)

※ 거창승강기R&D센터 예산 1,300백만원중 100백만원 군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가. 시험인증분야 신규 사업개발 : 방화시험분야 KOLAS 획득, 공인시험 지원체계 구축, 방화시험설비(문세트시험장치) 보강 구축

나.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 내환경 시험장비 부대시설 구축, 장비 Upgrade 교정 및 유지관리

3. 부서의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은 거창승강기R&D센터의 자립화를 위해 재정지원으로 거창승강기 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거창승강기R&D센터 예산 1,300백만원중 100백만원 군비를 편성 하였으므로
- 2016년에 예산 편성한 출연금 2,250백만원은 타당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및 업무협약서 : 붙임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사 업 명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및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					
단체현황	기 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거창승강기R&D센터)				
	기관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설 립 일	1966년 4월	대표자	이 원 복		
	업 종	서비스 및 기술연구용역	대표번호	055-791-3114		
	기관형태	기타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113-82-06228		
	기관소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거창승강기R&D센터) -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 획득 지원 / 수출시장개척 지원 / 네트워크확대 지원 등 승강기분야 One-Stop 통합지원 솔루션을 제공.				
총괄책임자	성 명	강 인 구	직 위	센터장		
	부 서	기계시스템본부 승강사업센터 /경남지역본부(겸)		전 화	055-940-6500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14.9.1 ~ 2017. 8. 31 (36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 1.1 ~ 2016 .12. 31 (12개월))					
사 업 비	사업명		계	2014	2015	2016
	구조 및 기술 고도화 사업	국 비	3,900	1,000	1,300	1,600
		도비	2,750	500	1,100	1,150
		군비	2,750	750	1,000	1,000
		민자	400	100	100	200
		소계	9,800	2,350	3,500	3,950
	시험인 증사업	군비	300	100	100	100
		KTL	3,300	1,000	1,100	1,200
소계		3,600	1,100	1,200	1,300	
지방자체단체	지 자 체 명	책 임 자	전 화	실무담당자		
	경상남도	이한복 사무관	055-211-6432	강정훈 주무관		
	거창군	김성윤 계장	055-940-3701	이기웅 주무관		
참여기관	참여기관명	책 임 자	전 화	실무담당자		
	경남테크노파크	정순현 선임연구원	055-253-6414	정순현 선임연구원		
9)실무담당자	성 명	김재진		전 화	055-940-6501	
	부서/직위	기계시스템본부 승강사업센터 / 연구원		휴대전화	010-2835-2812	

[붙임 2]_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8호, 2014.12.23., 일부개정]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5.5.28.]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타법개정]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30.]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상남도(이하 "도"), 거창군(이하 "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중 지방비(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수행 및 역할)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와 "군"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와 기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KTL"은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조(사업비 교부 및 집행)

(1) "도"와 "군"은 본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예산(도비, 군비)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5,500	1,250	2,100	2,150	
도 비	2,750	500	1,100	1,150	
군 비	2,750	750	1,000	1,000	

(2) "도"와 "군"은 "사업비"교부후 사업수행이 미미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3) "KTL"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법령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정하는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정산)

"도"와 "군"은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KTL"은 정산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사업 이행여부 확인 등)

“KTL”은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도”와 “군”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도”, “군”, “KTL”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와 “군”이 “KTL”에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결과의 활용)

“KTL”은 거창승강기밸리의 발전을 위해 사업결과 성과물이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 (1) “KTL”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KTL”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도”와 “군”은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기타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확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에 각 기관의 장이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6월 23 일



경 상 남 도 지



거 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상남도(이하 "도"), 거창군(이하 "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재)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거창승강기 R&D센터(이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군", "KTL", "경남TP"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승강기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체계)

"도"는 총괄책임기관으로서, "군"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KTL"이 주관기관이 되고 "경남TP"가 참여기관이 된다.

제3조(기관 역할)

- (1) "도"는 "센터"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인력파견 등 총괄책임
- (2) "군"은 기업유치, 행정지원 인력파견 등 행·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
- (3) "KTL"은 센터 관리·운영, 국비지원과제 및 기업지원사업 발굴 등 주관
- (4) "경남TP"는 국비지원과제 및 기업지원사업 발굴 등에 참여

제4조(조직 구성)

주관기관은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배치,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약당사자와 협의를 통하여 파견인력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유권 및 임대)

"군" 소유인 "센터"의 부지는 "경남TP"에 무상임대하고, "경남TP" 소유인 기업지원동과 시험연구동은 "KTL"에 무상임대하며, 테스트 타워 및 시험장비 등은 "KTL" 소유로 한다.

제6조(운영 책임자 임명)

“센터”의 운영 책임자는 주관기관이 “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7조(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을 해지할 경우 1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기타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확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에 각 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2월 20일



경 상 남 도 지 사

Handwritten signature



거 창 군 수

Handwritten signature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Handwritten signature



(제)경남테크노파크원장

Handwritten signature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5-119
----------	----------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9조
- 대 상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장민철)
- 사 업 비 : 24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150	240	240	120	36	84	-

- 사업내용
 - 석분슬러지 광물화 연구
 - 석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석재표면처리기술 응용 및 활성화

3. 부서의견

- 석재산업의 애로사항인 석분슬러지의 처리와 석재표면 처리기술 응용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지원사업이 필요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화번호 : 055-940-3924		
					홈페이지 : granite.go.kr		
주요연혁	법인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명		
인원 (‘15.10.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장민철	거창군청(군수 권한대행)				
	상임이사	김건기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비상임이사	조철효	경남도립거창대학				
		강찬홍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최일수	거창석재조합(주)				
		임진홍	거창석산협회				
		주우일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성호	한국승강기대학				
		홍세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창석	거창군청(승강기경제과장)				
	신판성	거창군청(산림녹지과장)					
감사	이상철	이상철 법률사무소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07
	예산액	200	200	200		부채	13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0			290		40	

[붙임 2] 관계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의안 번호	2015-120
----------	----------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장민철)
- 사 업 비 : 2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200	200	200	-	-	200	-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3.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수행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화번호 : 055-940-3924		
					홈페이지 : granite.go.kr		
주요연혁	법인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명	
임원 (‘15.10.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장민철	거창군청(군수 권한대행)				
	상임이사	김건기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비상임이사	조철효	경남도립거창대학				
		강찬홍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최일수	거창석재조합(주)				
		임진홍	거창석산협회				
		주우일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성호	한국승강기대학				
		홍세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창석	거창군청(승강기경제과장)				
	신판성	거창군청(산림녹지과장)					
	감사	이상철	이상철 법률사무소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07
	예산액	200	200	200		부채	13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0			290		40	

[붙임 2] 관계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농업회의소 출연(안)

의안 번호	2015-121
----------	----------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거창농업발전과 농정 파트너로서 거창군과 거창농업인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인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3조
- 대 상 : 거창군농업회의소(대표 김제열)
- 사 업 비 : 54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54	54	54	-	-	54	-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소식지 발행, 농업정보 수집, 농업농촌 발전 심포지엄 개최 등 회의소 주관사업 운영비 지원

3. 부서의견

- 농업계의 보편·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농업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근거	법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조례 :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 : 055-943-5547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943-5547		
주요연혁	2012년 4월 30일 거창군농업회의소 설립 2012~2015년 거창군농업회의소 분과토론회 2013~2015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 공모사업 진행 2014~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진행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명		3명		명		
임원 (‘15.10.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회장	김제열	前 한농연 거창군연합회 회장			2015~2017 (3년)	
	부회장	추연백	前 거창낙우회 회장			2015~2017 (3년)	
	부회장	장병성	前 한우협회 거창군지부 사무국장			2015~2017 (3년)	
	부회장	강찬홍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지부장			2015~2017 (3년)	
주요기능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거창군 농업발전 추구						
자본금 (단위:백만원)		44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4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0
	예산액	75	99	135		부채	0
	지자체 지원액	40	54	54		자본	4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5				134		1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12.03.26 조례 제20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 ① 거창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 ②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조례 제2074호 201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